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제4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제4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목 적

-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전환해나가는 시점이므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국가유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 개 요

- 주 제 :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 방 향 : 국가유산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청년세대들의 의견수렴
- 일 시 : 2023. 10. 24. (화), 14:00~16:00
- 장 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 강당(충청남도 부여군)
- 주 최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참 석 자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대학생 기자단, 전통대 학생 등 30여명

□ 세부일정

[사회] 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시 간	일 정	주요내용
14:00-14:05	5'	-
14:05-14:10	5'	개회사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14:10-14:15	5'	기념촬영 제4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개최 기념촬영
14:15-14:30	15'	주제발표①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추진내용 - 이홍일(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사무관)
14:30-14:40	10'	주제발표② ○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① - 박지원('I got '어보'이 멋진' 팀장/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14:40-14:50	10'	주제발표③ ○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② - 김주아('산성의 정석' 팀장/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14:50-15:00	10'	휴식 휴식 및 장내 정리
15:00~16:00	60'	국가유산 정책과제 의견수렴 발표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 정책 제언
16:00		폐회 폐회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차 례

“ 개 회 사 ”

이경훈 | 문화재청 차장 • 01

“ 주제발표 ①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추진내용 • 03

이홍일 |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사무관

“ 주제발표 ② ”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① • 23

박지원 | 'I got '어보'이 멋진' 팀장/
'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 주제발표 ③ ”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② • 35

김주아 | '산성의 정석' 팀장/
'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 부 록 ”

국가유산기본법 • 49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국가유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4차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전반적인 체제 전환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가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국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의 사회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 세대에 걸쳐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양질의 문화 콘텐츠 소비자 증가하고 있고 소유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성에서 감성 중심으로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향후 국가유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국가유산을 가장 많이 향유하게 될 여기 모인 젊은 정책고객들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발제를 맡은 두 팀장은 2022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결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두 팀장들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국가유산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통해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주제 발표
①

국가유산 체제 전환 추진내용

이 홍 일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사무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023. 10. 24.



문화재청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1

목 차

I 국가유산 체제 전환 추진

- 1 추진 배경
- 2 추진 경과
- 3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II 국가유산 체제 법제화 추진

- 1 추진 경과
-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 3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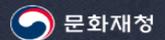
2

Part I

국가유산 체제 전환 추진



1.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유산 분류체계와 연계 필요”

○ (명칭한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립 필요

- △과거 유물의 자산, 재화적 성격이 강함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원용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정 (1962년, 명칭 및 분류체계 동일)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지적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1990년대 후반)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한 국	일 본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추가) 전통적 건축군, 문화적 경관

* 분류체계 비체계성 : 유/무형 대분류 적용하나, 기념물은 유형, 민속문화재는 유·무형에도 해당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정의와 사전적 의미·일반인 인식과의 차이 존재

문화재보호법 상 정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 유산 분류체계와 연계 필요”

○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가 상이하어 국제기준과 연계된 기준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국제교류·세계화 확대 추세에 걸맞게 국제 기준과 연계성 확보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보편화가 시작, 이후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2001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년)이 별도로 체결됨.

* 통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용어는 세계유산 협약 상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함.

2) 개선 방향

“국제협약의 분류체계, 문화재법 및 행정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국제기준과의 연계성) 유네스코 유산 협약 등의 국제적 유산 분류체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추진, 개별 유산의 형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재정립

○ (법률 체계와의 연계성)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지정·등록) 체계와 관련 법률체계를 함께 고려, 통합적 개편안 마련

1)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수렴

“내·외부 문화재 전문가, 일반국민 대상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추진”

◇ 과거 논의 진행 상황 ◇

- ▶ 2005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 ▶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 ▶ 2017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 ⇒ 그간의 논의 및 연구사항을 집약하여 개선안을 마련,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추진

◆ 추진 경과 ◆

- (’22.1월초) 개선안 초안 마련(내부TF 회의)
- (’22.1.26.)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전 의견수렴 회의 개최
*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담당 공무원, 전국학예연구회 소속 학예직 공무원(기초지자체) 대상
- (’22.2.8.~3.15.)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의견수렴(9개 분과 보고(원안 접수))
- (’22.2.17.) 문화재분야 **전문 언론인** 대상 자문회의
- (’22.3.18.) **불교계(조계종)** 대상 개선안 의견수렴 설명
- (’22.3.18.~3.22.) **대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p8~9)
- (’22.3.31.)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미래지향적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문화재 전문가, 분야별(행정, 법학, 경제 등) 전문가 참석
- (’22.4.11.)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언론 브리핑)
*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위원장단 회의 /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 및 가치증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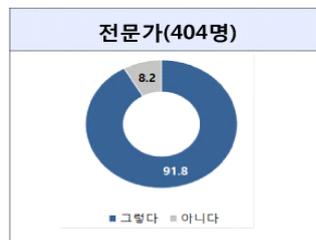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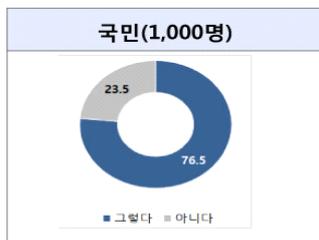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실시 개요 ◆

- ▶ 기간 : '22. 3. 18.(금) ~ 3. 22.(화) / 5일간 (전문 조사업체 의뢰)
- ▶ 설문 대상
 - 국민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 배분)
 - 전문가 : 문화재위원회 등 위원 및 전문위원 **404명** (총 471명 중 86% 응답)
 - * 문화재위원회 258명, 무형문화재위원회 52명, 수리기술위원회 70명, 고도보존 역사문화권위원회 24명

“국민 및 전문가 대다수,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8명(76.5%), 전문가 10명 중 9명(91.8%)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공감



2) 설문조사 결과

“국민 및 전문가 대다수, 유산 개념 변경 적절, 가장 적절한 통칭 국가유산 선택”

-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과 전문가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국민 90.3%, 전문가 95.8%)



- 각 유산을 포괄하는 통칭으로 ‘국가유산’이 적절 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87.2%, 전문가의 52.5%로 다수가 선택 (전문가: 국가유산 52.5%, 문화유산 38.9%, 기타 8.6%)



4) 국정과제 채택

“새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유산 체제 도입> 채택(’22.5월)”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 (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분류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

-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국가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능 대전환으로 국민 친화적·세계적 유산 가치 증진

• (~’22.下)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22.8.11)

-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발의

* 각 유산별 법률 정비 추진(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법 개정, 자연유산법 제정 등)

- 부처명 변경(문화재청→국가유산청)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행정안전부 협의 필요)

9

1) 개선안 주요 내용

“문화재의 유산 개념 변경 및 국가유산 체제 도입”

○ (명칭 재정립)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과거 유물 재화 개념의 ‘문화재’ 탈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

* 문화재(재화, 사물, 과거, 행정, 규범적 한정) ⇒ 유산(계승, 활용, 미래, 포괄적 보호로 의미 확장)

○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대칭(상응) 개념, 헌법上 문화국가 실현, 국가의 유산 보호 책임 표방, 국내외 ‘국가’유산 사용 사례 참조

○ (정책범위 확장) ‘비지정유산’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보존관리 규제 중심에서

국가유산복지, 교육, 홍보, 산업육성 등 활용·진흥 정책의 활성화

10

3. 주요내용

2) 현행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3. 주요내용

3) 개선안

구분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4) 경제적 효과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생산 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억원)	취업 유발효과(명)
① 국민인식조사	2,942~ 3,503	1,870~ 2,120	2,550~ 2,905
② 산업연관분석	4,151	1,938	2,702

* [분석기관/방법] 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경제전문가 참여) / 인식적 관점 : 국민인식조사
(효과성 설문 및 지불의사 측정 방식 합계)
② 한국산업개발연구원(민간) / 계량적 관점 : 산업연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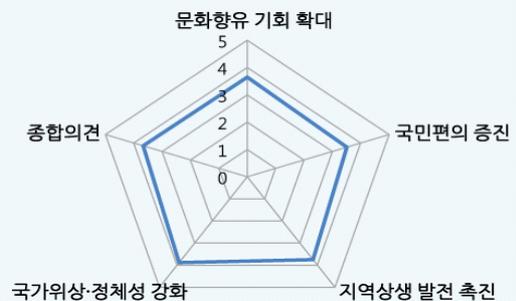
▶ 국가유산체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 각 분야별 보존·관리·활용 확대 기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5) 사회적 효과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적 영향	평균값
문화향유 기회 확대	3.65
국민편의 증진	3.51
지역상생 발전 촉진	3.75
국가위상·정체성 강화	3.88
종합의견	3.67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2.8월)



- ▶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모든 항목이 중간값인 3점보다 높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향후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 운영되고 국민의 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면 긍정적 효과 인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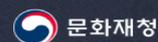


국가유산 체제 법제화 추진



15

1. 추진경과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필요성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실현

- 헌법 정책의 기본법화 : 각 부처는 핵심 분야의 주요 정책사항을 기본법화
 - * 기본법은 복지, 환경, 안전, 산림, 가족 등 각 분야 총 77개(환경정책기본법, 산림기본법, 문화기본법 등)

○ 문화재보호법 한계 극복

- 기본법 + 실체·절차법 성격 혼재
- 규제법으로 일반적 인식, 사실상 '지정문화재법'으로 운용
- 잦은 개정(70여회, 거의 매년 개정)으로 복잡화 및 비체계성 노정

○ 문화재 행정의 체계화

- 본청 기준 11개과 이상의 부서가 문화재보호법 운용
 - * 정책총괄과, 안전기준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활용정책과, 국제협력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유산협력팀, 정보화담당관실, 디지털문화유산팀 등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필요성

○ 소관 법령의 증가 및 다양한 입법 수요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증가[12개])

- 문화재보호법('62년) → 문화재기금법('99년) → 고도보존법('04년) → 문화유산신탁법('06년) → 문화재수리법, 매장문화재법('10년) → 무형문화재법('15년) → 신라왕경법('19년)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법, 풍납토성법('20년)

▶ (다양한 입법 수요)

- 자연유산법, 근현대유산법('20년), 국외소재유산법, 궁능문화유산법('21년), 수중문화재법, 문화재활용법('22년) 등 제정안 발의

○ 미래환경 변화의 대응 필요

- 사회환경 변화(도시화, 지방소멸,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등)
- 경제환경 변화(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화, 문화자원화 등)
- 국제환경 변화(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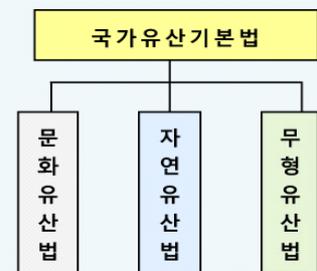
1) 법 체계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3개법) 체계로 정비”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문화유산법(現문화재보호법 개정), 자연유산법(제정), 무형유산법(現무형문화재법 개정) 등 4법 일괄 제·개정

-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의 정책패러다임 변화

현행		제정 후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유형문화재	문화 유산	- 유형문화유산 - 민속문화유산 - 기념물(사적 등)	문화 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자연 유산	- 동물, 식물, 천연 보호구역 등 (7개)	자연 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 전통공연 등(7개)	무형 유산	- 전통공연 등(7개)	무형 유산법 [개정]	



2) 법안 추진 경과

- ('22.9.23.)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체제 12개 법률 제·개정안 발의(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22.12.6.) 국가유산기본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문체위 상정
 - ('22.12.9./'23.1.30.) 자연유산법안 법안소위심사('20.7.20.발의 이상헌의원안/배현진의원안 병합)
- ('23.1.31.) 국가유산기본법안 문체위 공청회 실시 / 자연유산법 문체위 의결
 - ('23.2.21./3.21.)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연계법률(총11개) 문체위 법안심사 진행(통과)
- ('23.2.27.) 자연유산법 국회 본회의 의결 ('23.3.21. 공포) [시행 '24.3.22.]
- ('23.3.29.)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연계법률(총11개) 문체위 의결
- ('23.4.27.) 국가유산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23.5.16. 공포) [시행 '24.5.17.]
- ('23.7.18.) 국가유산기본법 연계법률(총10개) 국회 본회의 의결 ('23.8.8. 공포)

3) 국가유산기본법 연계 제·개정 법률

각 유산별 법률 제·개정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1	문화재보호법(개정) * 법률명(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한정하여 명칭 변경, 국가유산기본법과의 정합성 반영 정비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23.3.21. 공포)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법률명(변경):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 국가유산기본법과의 정합성 반영 정비

3) 국가유산기본법 연계 제·개정 법률

연계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8개)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문화재"용어 변경 등)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 법률명(변경) :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수중유산, 매장유산조사 등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 법률명(변경)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3	문화재보호기금법(개정) * 법률명(변경)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 국가유산보호기금 등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등
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가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등
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가유산,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 복원 등
7	종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등
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개정)	국가유산

※ 정부조직법 동시 발의('22.9.22.)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기관명칭 변경 추진(행안위 계류)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2)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 성 : 총 6장 35조 (부칙 3조)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기본이념 및 보호원칙,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사항 등을 제시)

구분	조문	비고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확대) (권리 신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 조사·연구 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제12조 인력 양성 등	(확대)

2)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조 기본이념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제3조 정의

- ①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
- ②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 ③ 자연유산: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 ④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23

2) 구성 및 주요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함. ※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개정 중('23.10.6. 본회의 통과), 시행령 준비 중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짐.

제7조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통해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24

2)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조문	비고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신설)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제20조 자격 관리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신설)
	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신설)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제27조 산업 육성	

25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역사문화자원)
- ② 미래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예비문화유산)

< 국정과제 선정 운영 >

- 역사문화자원: (1단계) '20~'24년까지 조사, '24년 관리방안 연구용역, (2단계) '25년 보존관리체계 구축(관리범위, 예산지원 등 법제화 추진) ※ 향토유산과의 포괄적 관리 검토 추진
-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9.14. 제정)
 -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23, 7월말)
 - (비전)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가치 보호
 - (정책방향)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후 탄력체계 구축, 국가유산의 촘촘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26

2. 국가유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
- ②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③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유산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의원 발의 준비)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22.2월 발의)

제27조 산업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함.
- ②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유산 산업통계 조사 및 국가승인 추진(통계청, 2023년 국가통계개발사업 과제 선정)
 - 국가유산산업 분류, 시장규모 및 업계 현황의 계량화·객관화로 국내외 산업 경쟁력 현황 파악·평가
- 국가유산 산업법 제정 추진(연구용역 추진/23년)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2)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조문	비고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6장 보칙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제35조 과태료	(신설)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을 설립함

* 現 한국문화재단 → '국가유산진흥원' 명칭 변경 (당초 발의안 '한국유산재단',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

* 우리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초 등재일(95.12.9.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3) 국가유산체제 명칭 변경

-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또는 2개 이상 유형(문화·무형·자연)의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행	변경
문화재	국가유산

-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유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행	변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29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3) 국가유산체제 명칭 변경

현행	변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보유자, 명예보유자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

30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3) 국가유산체제 명칭 변경

○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행	변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31

2.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3) 국가유산체제 명칭 변경

○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기념물 ○○자연유산	위원회 심의 등 재편 필요
	○○민속문화재	○○민속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기초단체 지정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 표준안 준비 중(연말 즈음 완료)
	○○향토문화유산		
	○○보호문화유산	○○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	

32

1) 후속 진행사항 및 조치 계획(문화재청)

-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은 정책대 전환·미래전략 비전 수립
 - 국가유산 보호 정책방향 및 정책변화·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국가유산 체제 「정책포럼」 운영 : (1차) 6.30 정책전문가(종합) / (2차) 8.8. 지역균형발전 / (3차) 9.14 산업분야 / (4차) 10.24. 청년세대 / (5차) 11월 중 정책전문가(종합)
- 국가유산 체제 하위 법령·법규 일괄 정비('24.5월 시행 前 완료)
 - 국가유산 체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제·개정(입법예고 중 / '23년 초 완료 예정)
 - 지자체(시·도 등) 문화재 조례 제·개정 추진(협조요청, 추진사항 모니터링 중)
- 국가유산정보 정비 및 관계부처 협력 추진
 - 국가유산 정보(각종 홈페이지·포털), 안내판 정비 추진
 - (교육부)교과서 개편, (문체부)표준국어사전 정비, 박물관·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관광, 전통문화·공예·공연 등, (국토부)도로표지판, (환경부)국립공원, (과기부)과학관, 지자체

2) 홍보 진행사항 및 추진 계획(문화재청)

-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추진('23.12.8.)
 - 국가유산 보호 정책방향 및 정책변화·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중
- 국민인식 개선 홍보 추진('23.5월~)
 - 국가유산 체제 전환 홍보계획 수립('23.5월말)
 - * [언론보도] 국가유산기본법 통과, 미래비전 선포식 등 주요 계기 보도자료 배포
 - * [온라인홍보] 기관 SNS 홍보, 홈페이지, 대학생 기자단 운영, 카드뉴스 제작 등
 - * [홍보콘텐츠] 홈페이지, 기념식, 유튜브 채널 등 정책홍보영상 제작
 - *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언론대응, SNS홍보, 공모(슬로건, 엠블럼), 홍보물(포스터, 동영상 등), 행사(산업전, 정부박람회)
- 국가유산 체제 지자체 등 설명회 추진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자체(광역·기초)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2회/7월,8월) 등
 - * 지자체 운영 조례 제·개정 및 안내판 교체 등 지원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주제 발표
②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①

박 지원

‘I got ‘어보’이 멋진’ 팀장/’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3.10.24

제4차 국가유산정책포럼

제 12기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 I got '어보' 이 멋진 > 팀장 박지원



목차

1.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소개
2. 아이갓어보 활동 소개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출처: 문화재청

● 주최/주관

문화재청/(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 목적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의 효과적 보존·활용을 도모하고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문화를 전파하고 젊은 계층의 문화재 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함

● 선발대상

내·외국인 대학(원)생 130명 내외 (1팀 4인으로 구성)

● 활동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 선택하여 홍보·환경개선·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의 활동 진행
-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잠정목록 포함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주관운영단체	선정 팀	선정 문화재
한국의재발견	비밀기록의 정원	승정원일기
	어보자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해리포터	일성록
문화살림	흔이백이	종묘, 왕릉
	모시중헌디	한산 모시 짜기
	산성의 정석	남한산성
해반문화	화성방위대	수원화성
	훈장님	한국의 서원
	I got '어보' 이 멋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충북문화유산 지킴이	실록홈즈	조선왕조실록
	아리아리	아리랑
	출몰처용	처용무
대동문화재단	공명	공주 공산성
	화랑해	경주역사유적지구
	직지로직진	직지심체요절
대동문화재단	감파라다	연등회
	KKT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펼연	한국의 서원 (필암서원)
대동문화재단	창덕담화	창덕궁
	인연지기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출처: 문화재청



● 시상개요

- 문화재청장상 3점(대상1, 최우수상2)
-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상 2점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장상 2점
-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상 2점
-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상 3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태조 추상시호 금보



태조 추상시호 옥책

- 금, 은, 옥으로 만든 **왕실의 의례용 도장**
-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거나 왕비, 세자빈, 세자를 책봉할 때 제작

- 세자, 세자빈의 책봉과 비와 빈의 직위를 하사할 때 만든 교서
- 어보와 함께 조선의 **왕실 구성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의물**이며 신주와 함께 종묘에 봉안됨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영상

리플렛



공모전

굿즈

아이컷어보

영상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썸네일

아이컷어보

231024 국가유산정책포럼

영상

프로듀스 어보

당신의 어보에게 투표하세요!

문화유산 정책포럼

2022 도부의 문화재, 세계속의 K-HERITAGE! 국제문화재산업전

총 상금 1,040만원

2022 문화유산 아이디어 공모전

7. 11.(월) - 7. 15.(금)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즐기는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출은 7월 15일 오후 5시까지
 분야: 1) 제품 2) 미디어 3) 영상
 문의: 02-1234-5678 | heritage@culture.go.kr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7. 11(월) - 7. 12(수)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영상

2022 문화유산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 발표

영상 분야		
대상	문화유산이 펼쳐집니다	배*미
금상	프로듀스 어보	양*연
은상	아상-열암곡 마애불상	송*탁

2022 모두의 문화재, 세계속의 K-HERITAGE!
국재문화재산업전



리플렛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는 그 시대에 상응하는 어보와 어책이 주어졌습니다.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을 비롯하여 왕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뒷면/ 앞면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는 그 시대에 상응하는 어보와 어책이 주어졌습니다.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을 비롯하여 왕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보와 어책은 왕과 왕비, 세자 및 세자빈에게 부여된 사육신(忠, 효, 예, 공, 절, 의)을 표상하는 어보와 어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지

리플렛



 경북공관리소



 종묘관리소

굿즈

아이갓어보 굿즈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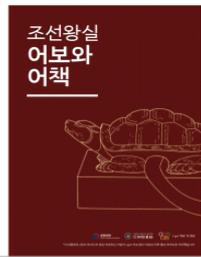
엽서 2개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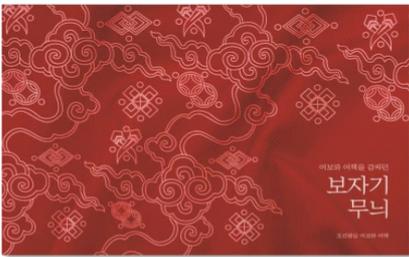
클립펜&스티커



리플렛



Designed by 양서연



굿즈



한국문화재단이 운영중인 **KHMALL과 협업** → **굿즈 세트 증정**

공모전

어린이 어보 그리기 대회

2022.08.16 - 2022.10.14

참가대상

- 13세 이하

작품규격

- 0형 도화지 (그림 재배 무관)

제출서류

- 출품작 1작품 (1인 1작품)
- 참가신청서 1부

작품주제

- 자신만의 창의적인 어보 그리기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품작과 함께 우편 제출 (10/14 도착까지 출품작 마감)

제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84-1 해빈문화 사무국 (우편번호: 22258)

문의

- 이메일 : igotuhbo@gmail.com
- 인스타그램 DM : Lgot_uhbo

시상

- 2022년 10월 28일 개별연락예정
- 수상작은 운영측 공식 SNS 계정에 전시예정

구분	시상내용
최우수 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 3만원 상당의 상품
우수 1명	문화상품권 5만원 + 3만원 상당의 상품
장려 1명	문화상품권 3만원 + 3만원 상당의 상품

주변인 책봉하기 글쓰기 공모전

마음을 전해요

어책? 책봉? 그게 뭐예요?

이 책은 조선시대의 세시, 세치만 등을 책봉할 때 만든 문서를 말합니다. 조선왕실의 활동상을 생생하게, 2017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국의 세계유산입니다. 이 책은 책봉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배운 이력이 등을 높은 문장으로 가득 채워놓았는데, 우리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인의 인품 등을 아이갯어보의 어보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주변인(주변인)을 주제로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아요?

참가대상

- 14세 이상 누구나

참가기간

- 9/1 (목) - 10/14 (금)

작품원칙

- 4000자 이내 자유 형식 (한글자 200여 기준 20행 이내)

시상

- 2022년 10월 31일에 개별연락

구분	시상내용
최우수 1명	상품 20만원
우수 1명	상품 15만원
장려 1명	상품 10만원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후 참가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에 제목 작성하여 이메일(igotuhbo@gmail.com) 제출
- 해당제목 (주변인책봉하기) 참가신청서, 이름
- 과일명도 이메일제목과 동일하게 작성

문의

- 이메일 : igotuhbo@gmail.com
- 인스타그램 DM : Lgot_uhbo

당첨내역

- 1인 3작품까지 출품 가능 (4수상 1 작품으로 제한)
- 수상이력이 있는 작품을 제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을 제출할 경우 추상이 취소됩니다.

공모전



표지



2022년 10월 1일에 후에 영도유서 선배 어르신들 사 당하는 마음을 담아 아입니다.
 하늘이 높고, 우주가 나아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 나 그 사이도 은연중입니다. 아예도 우리가 한평생 발 은 적이 달았나 봅니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행랑이 없었습니다. 그 말한의 슬픔이 머무른 대학고 오리엔테이션은 거만이 되어 받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세계 달남의 지름 되어 정열하고 무량한 대학 생활이 되었습니다.
 후배를 지금의 아이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을 잊지 않습니다. 대학명으로서 당신이 되었고, 선 배의 도리로서 보물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어중 의의 가르침은 때가 되고 있어 제 마음을 이루 었습니다. 지금 제 세상을 이룩한 것에 큰 도움을 남 기었습니다. 그 말하위를 바라거나 한성된 것입니다.
 일찍부터 커와 재능을 제쳐 훌륭한 명성을 도남인 모습에 어찌 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 은 글과, 하늘 아래 흘러가는 구름 같은 운우는 아직 도 제 뇌리에 깊게 찍혀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 기를 희망했고, 무니를 위한 정열이 구름들에 가재는 것처럼 피지었습니다. 회재물인 존중아하는 아재 건 고합니다. 다 직문어지요.
 자랑했습니다. 그 우운 겨울이 해도 달신은 예만 온 이 없으니 잊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갈 을 수 없었습니까. 저보를 위하여는 마음을 서로가 말

내지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주제 발표
③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②

김 주 아

‘산성의 정석’ 팀장/’22년 경진대회 최우수상



제 4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 사례

-남한산성 교육용 미션게임 제작 및 홍보

2022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산성의 정석> 김주아
(경진대회 문화재청장상 최우수상 수상팀)



목차

1. 주요 활동 요약	3
2. 게임 제작 과정	4
3. 홍보 활동	10
4. 활동 결과	18

주요 활동 요약



남한산성

2014년 11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남한산성 교육용 미션게임 제작
- ✓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남한산성 토크아보기 카드뉴스 발행
- ✓ 남한산성의 다채로운 풍경이 담긴 월간 배경화면 배포

게임 제작 과정

지킴이 활동목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 알리기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강도현 학예사님과 미팅

코로나19로 인한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 운영 잠정 중단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 개선 병자호란의 비극적 장소 → 세계유산 남한산성

게임 제작 과정

서훈남

-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연락병으로 자원하여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 등을 전달하는 연락책을 담당하는 인물
- 노비 출신이었지만 공을 인정받아 당상관의 자리에 오름



게임 제작 과정



활용한 플랫폼: 리얼월드
모바일 게임 제작 서비스 지원



모바일형

<남한산성 비밀요원> -임무를 완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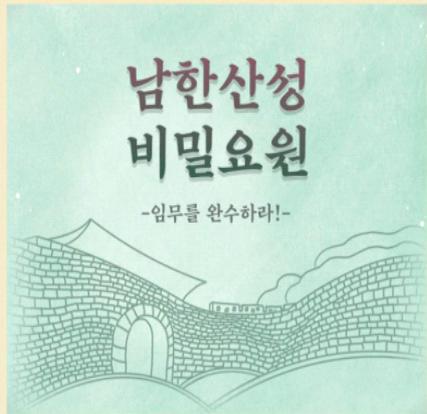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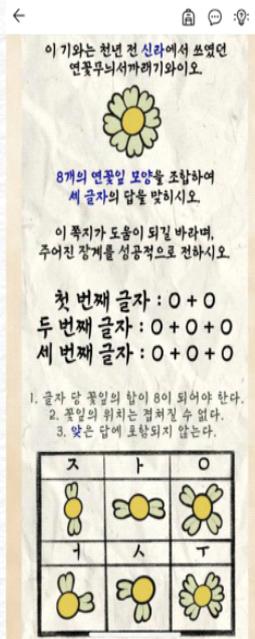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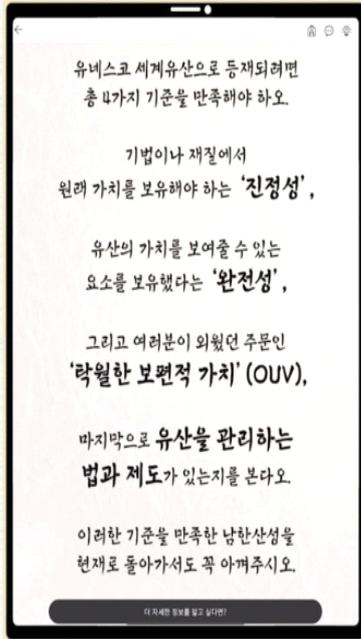


아외형

<남한산성비밀요원> -현재로 돌아가라!

게임 플레이 시간 / 장소	15분 내외 / 장소 제약 없음	30분~1시간 / 남한산성 행궁
스토리	남한산성에 현장 체험학습을 왔다가 병자호란 시기 조선으로 타임슬립해 왕에게 지방의 소식이 담긴 장계를 전달하는 이야기	모바일형과 이어지는 스토리로, 장계 전달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뒤 행궁에서 미션을 해결하여 전쟁 중인 조선에서 현재로 돌아가는 이야기

게임 제작 과정



모바일형



야외형

게임 제작 과정

모바일형 게임



세계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건축적 요소(성곽 축조 방식 등) 습득 가능

야외형 게임



남한산성이 충족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습득 가능

홍보 활동 - 온라인

-SNS를 통해 카드뉴스 및 월간 배경화면 배포

산성의 정석 인스타그램



산성의 정석 26 게시물 2,365 팔로워 2,347 팔로잉

산성의 정석
디지털 크리에이터
2022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
fmsanseong@gmail.com
11월의 남한산성 월페이퍼 다운
drive.google.com/drive/folders/1SLtq_bm4qijDOjch...

남한산성 톺아보기

- 6월 팀소개&남한산성 개괄
- 7월 남한산성의 축성술
- 8월 남한산성의 군사유산 가치
- 9월 산성의 정석 활동 중간 보고
- 10월 남한산성 항공 소개
- 11월 남한산성 내 문화재 소개

홍보 활동 - 온라인

-SNS를 통해 카드뉴스 및 월간 배경화면 배포



답사를 다니며 직접 촬영한 남한산성 풍경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제작

홍보 활동 - 오프라인

-게임 참여 이벤트 부스 운영
-이벤트 참여 보상으로 지급할 기념품 제작



지화문 텀블러

남한산성 대표 포토존 지화문(남문)을 그려넣은 텀블러



남한산성 수제 비누

남한산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들어간 남한산성 수제 비누



남한산성 포토티켓

유네스코 등재 기준을 알 수 있는 기념 포토티켓

홍보 활동 -오프라인

-2022 문화재 지킴이 전국대회 (22.09.16, 수원 화성 행궁)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김내동 회장님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활동중인 문화재 지킴이 단체들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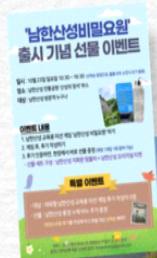
문화재 지킴이 전국대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남한산성 교육용 미션 게임 홍보

홍보 활동 -오프라인

-남한산성 홍보 부스 (22.10.23, 남한산성 전통공원)

남한산성 방문객 대상으로 게임 홍보

→ 약 **150**명 참여



홍보 활동 -오프라인

-동덕여대 홍보 부스 (22.11.08, 동덕여대 백주년 기념관 앞)

동덕여대 재학생 대상으로 게임 홍보
→ 약 **120**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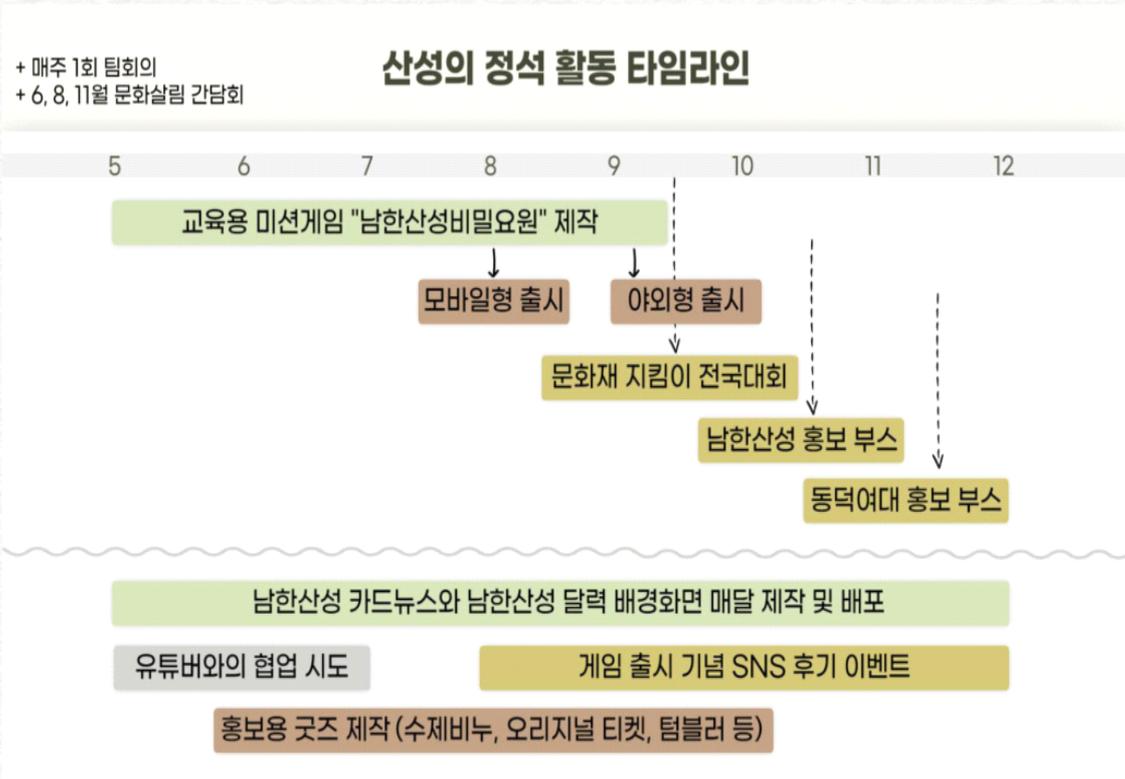
홍보 활동 -오프라인

-남한산성 곳곳에 홍보물 설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협조를 얻어 행궁 매표소 앞과
행궁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게임 홍보 현수막 설치

남한산성 주변 상점에 게임 홍보 포스터 부착



활동 결과



게임 플랫폼 리얼월드의 리얼월드's PICK! 게임 선정

게임 참여 인원 **645**명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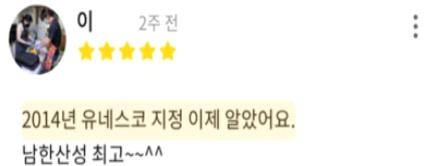
모바일형) 509명 (08/01~11/27 기준)
야외형) 136명 (09/20~11/27 기준)

활동 결과

-모바일형 게임 후기 (258개의 후기)



'리얼월드' 앱, 김**님 후기



'리얼월드' 앱, 이**님 후기

게임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해 알게 된 점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세요. 응답 17개

남한산성의 기초가 되는 성이 주장성이라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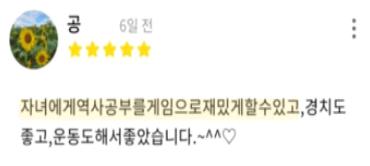
만족도 조사, 익명의 20대 후기

활동 결과

-야외형 게임 후기 (29개의 후기)



'리얼월드' 앱, 최**님 후기



'리얼월드' 앱, 공**님 후기



인스타그램, @comet.****님 후기



제 4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 창의적 보존과 활용 사례
-남한산성 교육용 미션게임 제작 및 홍보
2022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산성의 정석> 김주아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래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부
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 7 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 8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9 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 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9409호, 2023. 5. 1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memo



memo



memo

